2025년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2025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2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

1 사업 개요

□ ICT 표준기술을 적극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표준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 강화

2 지원 방식

□ 공인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선정기업 맞춤형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및 컨설팅

□ 참여 주체별 역할

참여 주체	역 할			
주관기관 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	■ 지원과제 수행, 평가기관 실무협의 및 운영지원			
기술평가기관	■ 선정기업 협약, 가치평가 수행 총괄 관리 및 운영			
선정기업	■ 표준기술 가치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수행			

3 지원 내용

- □ 표준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 및 컨설팅
 - o 선정기업 보유 표준 및 특허 기반 가치평가 진행
 - * 가치평가 금액 내 보증서 발급,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 평가 및 컨설팅 무료 제공(기업 희망 시)

4 지원 대상

- □ 신청 자격
- o ICT 분야 중소기업
- □ 우대 사항
 - o 표준 개발(포럼/국내/국제)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
 - o 표준특허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
 - o 해당 기술 관련 유관기관 수상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

5 지원 규모 및 선정 평가

- □ 지원 규모
 - o 선정기업수: 6개(기업당 15백만원 지원)
 - o 가치평가 비용: TTA가 전액 부담(선정기업은 일체 추가 비용 부담 없음)
- □ 선정평가
 - o 기업에서 제출한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외부평가위원 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진행
 - o (평가기준) 지원 필요성(30점), 기술성(20점), 권리성(15점), 시장성(15점), 활용계획(20점)

평가 항목(배점)	평가 기준
지원 필요성(30)	o 국가전략기술, 디지털 전략 기술 등 정부 정책 부합성 o 표준과의 연관성
기술성(20)	o 기술완성도(타 기술 대비 우수성 등)
권리성(15)	o 대상 특허와 기술/표준의 연관성
시장성(15)	ㅇ 시장성(사업성) 및 파급효과(기대효과)
활용계획(20)	ㅇ 보고서 활용계획의 구체성

6 사업 신청 안내

\Box ([신청기간]	2025년 2월	월 24일(월)	~ 2025년 (3월 10일(월) 18시까지

□ (신청방법) 이메일(consulting@tta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□ (구비서류 및 제출방법)

[1단계] 지원 신청서 작성

[2단계] 제출서류 구비

[3단계] 신청완료 및 확인

No	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	
1	지원 신청서 (첨부의 지원 신청서 양식 활용)		한글파일(.hwp .hwpx)로 제출 요망	
2	특허명세서	이메일(<u>consulting@tta.or.kr</u>)	지원기업 소유의 등록 특허에 한함	
3	사업자등록증	로 제출	사본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첨부의 동의서 양식 활용)		대표자	

[4단계] 제출완료 및 확인

- 제출완료 후 접수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메일로 회신 예정

7 추진 일정(안)

모집공고		선정 평가		선정 통보		협약		가치평가		결과보고
'25.2.24.(월) ~ '25.3.10.(월) 18:00	\Rightarrow	3월 중	\Rightarrow	4월 초	⇔	4월 중	⇔	협약~ 11.30	\Rightarrow	12월 중

* 상기 일정은 내/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8 기타 사항

-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
- o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o 상기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o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
No	사유
1	선정 기업이 부도 및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
2	정부지원으로 동일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
3	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4	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5	정부 연구과제를 통해 불성실 수행 등 참여제한 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
6	신청서가 거짓으로 판정되는 경우

9 문의처

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진흥단

구 분		연락처	역 할		
주관	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	010-5110-6793	- 사업신청·접수, 선정평가,		
기관	(표준진흥단)		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		